

음료자동판매기 위탁운영관리 특수조건

제 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교내 음료자동판매기 운영사업자가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 2조(운영장소) 교내 자동판매기의 운영장소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며,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를 이탈 또는 기피 할 수 없다.

제 3조(계약기간 및 계약이행보증)① 계약기간은 2020년 08월 00일부터 2023년 07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서 작성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 : 판매수수료 총액)을 제출하며, 이는 계약중도 해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사용한다.

제 4조(기본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동판매기가 교직원 및 학생들의 후생복지시설임을 감안하여 신의에 바탕을 둔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 5조(판매수수료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판매수수료 총액(VAT포함)을 우리 대학교에서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지정 계좌에 일시불로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동판매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기, 수도사용료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제 6조(자동판매기 설치 및 이동) ① 계약상대자는 별첨 [음료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에 정한 종류와 설치 위치 및 대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우리 대학교에서 교체 및 증설 요구가 있는 경우 이의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리 대학교의 지정장소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우리 대학교의 허가를 받고 변경한다. 자동판매기 위치변경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전기 시설지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한다.

④ 필요 시 우리 대학교에서 기존 자동판매기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치변경을 요청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자동판매기 이동 비용도 부담한다.

제 7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계약상대자는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기타물품 등의 설치 시에는 우리 대학교의 승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또는 해지 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원상 복구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 한다.

② 별도의 물품보관장소는 없다.

제 8조(취급품목 및 판매가격) ①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은 시중대학 판매가보다 이하가격으로 판매하며, 계약기간 중 판매가격을 변동할 경우 우리 대학교와 협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불량품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판매 품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우리 대학교와 협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 대학교의 판매 품목의 종류 및 가격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우리 대학교에 일체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판매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 9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상기 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 대학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동판매기 위생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위생 불량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외부유입 독극물 및 원료 불량 등으로 인한 제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누전, 감전 및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자동판매기의 파손, 도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한 일체의 보상을 우리 대학교에게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우리 대학교의 수시 점검에 지체없이 응해야 하며, 상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10조(직원관리) 계약상대자는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또한 종업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위탁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매매 포함)할 수 없으며, 담보 제공 또는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재산의 보존) 계약상대자는 관리자로서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유익비 반환청구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타 해약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파기될 경우 우리 대학교에게 유익비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권리금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통

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우리 대학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2일 이상의 영업 중단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우리 대학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기타 계약조건 불이행 및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우리 대학교의 복지시설 정비계획 및 기타 계약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계약기간 종료 후 시설물 철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해지 시 30일 이내에 자동판매기 등 모든 설치 물품 및 취급 품목을 철수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우리 대학교에서 강제 철수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학내 출입 시 유의사항) 물품공급을 위하여 학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속도, 경적, 소음으로 인해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차량 운행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물품적재 및 운반에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결정한다.